
2021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



2022. 7.

서 울 대 학 교
[감 사 팀]

I. 2021년도 하반기 자체감사 현황

□ 감사 운영 방향

- 5년 이상 종합감사 미 실시 기관 감사
- 대학 주관 연구시설 등 내부통제 기능이 취약한 기관 감사

□ 감사 실시 기관 및 조치사항

- 실시 기관(대상기간 : 2021. 8. ~ 2022. 1.)
 - 종합감사(6개 기관) : 단과대학, 연구시설, 부속시설
- 감사결과 조치사항
 - 신분상 조치 : 4건 4명
 - 시정 : 13건(재정 12건, 3,039,589천 원 포함)
 - 경고·주의(기관) : 16건
 - 통보·개선 : 6건

II. 자체감사 주요 지적 사례

1 시설 공사 관리 부적정

□ 공사 제경비 미정산

-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의 금액이 실제로 지출된 금액보다 큰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자는 발주자가 확인한 환경관리비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기관은 견적서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총 2,833,180원을 사후 정산하지 않았고, ○○○○ 기관은 환경관리비(폐기물 관리비)가 계상된 견적서를 수령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 종료 후 실제 폐기물 처리에 소요된 비용과 관련된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총 660,000원을 정산하지 않고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음.

[관련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이행

-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한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 ○○○○ 기관은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 하자보증
기간 중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관련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 시설관리국 사전 기술검토 미이행

- 시설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기관 자체에서 집행 시 재원을 불문하고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과 총 시설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국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기관은 총 시설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사를 계획하면서 시설
관리국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2

저작권 수입 등 관리 부적정

- 수입금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세부용도를 정한 서울대학교 명의의 공식 계좌를 통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소관 수입을 법인회계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회계관계 교직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기관은 서울대학교 재원을 투입하여 서울대학교 소속 연구소와 학과 명의로 발간한 학술지와 서적 등의 저작권 수입을 기관 명의의 계좌가 아닌 연구소장 및 학과장 등의 개인 명의 계좌로 수령·관리하였고,
- ○○○○ 기관은 학술지 등의 기고자로부터 논문 게재료 및 심사료를 수령하여 다음 회차 학술지 발간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 및 기관 명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법인회계가 아닌 타 회계로 세입하였으며,
- ○○○○ 기관은 발간될 교재의 저작권 및 수입의 귀속에 관해 정함 없이 발전기금회계에서 20,000,000원(2개 과목, 과목 당 10,000천 원)을 지원하여, 학교 재원이 투입되어 개발된 교재(개인 명의 발간)의 저작권이 주저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 서울대학교 보관금 관리 규칙, 서울대학교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규칙]

3

임대 관리 부적정

- 서울대학교의 재산을 서울대학교 외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관련 규칙에 따른 서류를 총장에게 제출하여 임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임대가 승인된 경우 임대차 기간 등을 설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에 임대료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 서울대학교의 재산을 총장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해 총장은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기관은 총장의 승인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없이 학외 기관에 소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 기간의 제약 없이 무상으로 소관 공간을 사용하도록 하였음.

[관련 규정: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4

교양 교과목 운영 부적정

- 전임교원은 정규학기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학년도별로 18시간의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다수의 교수가 함께 강의하는 공동강의는 학점을 인원수에 따라 나누어 참여 교수별로 책임시간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교수는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보수, 수당 등 인건비를 지급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 ○○○○ 기관은 교양 교과목을 강의한 교수들에게 1시간의 책임시간을 임의로 0시간으로 수정하여 책임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법인회계에서 강의개발비를 지급하였음.

[관련 규정: 전임교원 책임시간 운영지침, 교수별 수업담당시간 입력 매뉴얼(학사과), 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